

▣ 200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총 60개사로 전년대비 20개사 순증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엘지, 에스케이(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등 총 60개사로 일반지주회사 55개, 금융지주회사 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2008년 9월 30일) 〉

구분	지주회사 수	자회사 수	손자회사 수	증손회사 수	합계
일반지주회사	55 (37)	334 (67)	197 (10)	8 (0)	594 (114)
금융지주회사	5 (5)	41 (3)	18 (0)	1 (0)	65 (8)
계	60 (42)	375 (70)	215 (10)	9 (0)	659 (122)

*()안은 상장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2004년 5월 22개 → 2005년 8월 25개 → 2006년 8월 31개 → 2007년 8월 40개 → 2008년 9월 6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동안 씨제이(주), (주)엘에스 등 25개사가 지주회사로 신규 전환함으로써 20개사나 순증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증가현상에 대해 공정위는 복잡한 출자로 얽혀진 기업집단보다 지주회사 체제가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각각 45.5%, 18.3%로 낮은 편이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균은 각각 74.2%, 73.0%로 법상 요건(상장 : 20%, 비상장 : 40%)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밖에 상당수의 계열회사가 존재하고, 행위제한 유예기간 중에 있어 지주회사체제 내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3년간 세번 이상 입찰담합하면 공공부문 입찰참여 어려워

일정기간 벌점이 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반복적인 입찰담합을 막는데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된 개정된 내용으로는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대상이 되는 업체는 범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 ▲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현재 입찰 참여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하도급법령에는 하도급 사건으로 인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담합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적발이 어려우며 위반유형이 단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령보다 벌점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 2008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

4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946개사의 소유지분구조 공개

공정위가 2008년 4월에 지정한 79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2008년 7월 현재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자산기준이 상향조정 됨으로써 지정 제외된 38개 집단을 제외한 41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946개사)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했다.

이번 소유지분구조 공개에는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현황, 소속 회사간 주식보유현황, 주요 환상형 출자현황,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개 집단 812개사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50.95%로서 총수와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 4.23%, 계열회사 지분 44.44%, 기타 지분(비영리법인, 임원 등) 2.29%로 구성되어 있다.

연속 지정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1.53%로, 지난해 51%(총수일가 지분 4.30%, 계열회사 지분 44.29%, 기타 지분 2.4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4개 기업집단에서 환상형 출자가 형성되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두산,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 일부 기업집단에서 환상형 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됐다.

또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에서 5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금융보험사(12개 기업집단 소속)가 68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은 1조5,148억 원으로 2007년 1조 5,05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총수가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3개 집단 134개사)의 경우는 대부분 모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계열 회사간 환상형 출자구조가 없고 4개 집단에 서 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 금융보험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사례는 없었다.

▣ 대형건설업체 현장조사 실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실태 파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협력 통해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실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건설업체 현장조사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으로는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 과거 법위반실적과 신고실적, 그리고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한 14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1차로 토건순위 1~50위 업체를 점검한 후에 2차로 51~100위의 업체를 점검했다.

현장조사에서 주로 파악한 내용은 ▲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초과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 행위 ▲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는 행위를 비롯해 기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의 내용 담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8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의 명칭 변경,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예치계약을 신설하는 한편,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완화했다.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영업정지 기준 중복, 제한 규정 등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혼란을 개선했으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 확보,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민간자율 규제의 기틀 마련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등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 현행법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 중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부분을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하고, 나목 규정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는 등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명확화 ▲ 선물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고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 ▲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및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10일 한국소비자원 대회의실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4개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점검 결과

대규모내부거래관련 공시위반 시행 초기에 비해 낮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1월 27일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8개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내역 〉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	과태료 합계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현대차	3	40,000	-	-	3	40,000
현대중공업	1	9,100	-	-	1	9,100
지에스	6	84,400	2	60,000	4	24,400
한진	1	8,800	-	-	1	8,800
합계	11	142,300	2	60,000	9	82,300

4개 그룹 8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내역으로는 ▲ 기업집단별로 현대차 3건, 현대중공업 1건, 지에스 6건, 한진 1건 ▲ 위반유형별로는 불완전공시(주요내용 누락) 2건, 지연공시 9건 ▲ 거래유형별은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 등이다.

공정위는 공시점검 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2007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으며, 위반건수로는 가장 적었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공시에 대한 교육·홍보와 CP의 보급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는 한편,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했으며,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유형이 과거 심결사례와 유사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위반유형이 적발된 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출중제 적용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인 중핵기업이 포함된 10개 기업집단 중 최근 공시점검 등을 받은 기업집단을 제외한 4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점검대상으로 삼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점검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14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높아져

2008년도 전부 승소 7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90% 이상 승소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전부 승소 6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80% 수준에서 2008년에 는 전부 승소 70% 수준, 일부 승소 포함 시 90% 이상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소율 변화 추이 〉

승 소 율	2006년	2007년	2008 (12월 10일까지)
① 전부승소	50건(60.2%)	34건(59.7%)	49건(69.0%)
② 일부승소	14건(16.1%)	12건(21.0%)	17건(23.9%)
전부·일부승소 ① + ②	64건(77.1%)	46건(80.7%)	66건(92.9%)

공정위는 최근 방과류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공 정위가 승소하는 등 그동안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 조사방식의 개선을 통한 충분한 입증자료의 확보 ▲ 경 쟁법 이론 및 경제 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심의준비절차 도입 등 의결절차 보완 ▲ 소송수행 체계의 개 선 등에서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수준을 더욱 향 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원은 1996년부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법 이론과 최근의 해외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공정위 의결에 대한 정치한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 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경쟁제한 효과의 적극적 입증과 엄격한 증거판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원 판결의 면밀한 분석 및 신속한 피드백(Feed Back)을 통해 경쟁법의 집행기관이자 준사 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

한편, 공정위는 승소율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공정위 의결에 대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 하는 관행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송 수행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 도 기대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

11개 기업집단 소속 236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이행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규모순위 상위 11개 집단 소속 236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 92개사의 153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1억 1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의무를 1일 지연한 경우 등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내역 〉

(단위: 건, 천원)

지정 순위	기업집단	과태료합계		정기공시		수시공시		경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삼성	15	109,750	5	26,450	10	83,300	2
2	한국전력공사	8	22,900	6	20,300	2	2,600	2
4	에스케이	17	103,050	2	14,000	14	89,050	1
5	엘지	21	159,350	9	64,400	12	94,950	4
6	대한주택공사	2	11,150	1	10,000	1	1,150	1
7	롯데	13	67,550	4	11,300	9	56,250	2
8	한국도로공사	2	20,000	1	10,000	1	10,000	1
9	포스코	20	179,600	10	88,000	10	91,600	3
10	한국토지공사	2	20,000	1	10,000	1	10,000	-
13	케이티	46	368,800	30	239,600	16	129,200	-
14	금호아시아나	7	56,350	7	56,350	-	-	-
	합계	153	1,118,500	76	550,400	76	568,100	16

11개 기업집단소속 98개 비상장회사가 16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전체 위반건수 중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7건, 공시는 했지만 지연한 경우와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각각 79건과 13건 등이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공시 위반이 82건(48.5%)으로 제일 많았고,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인 임원변동에 관한 공시 위반이 67건(39.6%)으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복사용지 가격담합 적발, 동남아 제지카르텔 제재

4개 동남아시아 제지업체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억 8,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17일, 최소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년여 동안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39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 국내시장 침입자제(‘홈마켓 존중’)를 통해, 자국시장에서 독과점지위를 보호받은 업체들이 초과공급물량을 제3국 수출시장에 해소하기 위해 덤핑하는 과정에서 상호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담합해 온 것으로, 제지카르텔에 참가한 업체로는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 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 어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이다.

2001년 2월 이후 4개사는 ‘트리플에이회의(AAA Meeting)’이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 나라에 대한 복사용지의 수출기준가격을 2004년 2월까지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트리플에이회의에서 소위 ‘목표가격(Target Price)’이라는 수출기준가격을 아시아 각 국가별로 설정했으며, 목표가격이 설정된 후 4개사는 각 나라에 소재한 현지 영업조직을 통해 경쟁사 동향을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해왔다. 특히 한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의 단계적으로 인하로 수입이 용이하여 특히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4개사 상호 간에는 자국 및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인정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하기로 합의(Home Market Respect Policy)하기도 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현재 호주에서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카르텔은 수입 복사용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사 간 및 이들 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는데, 2004년의 경우 국내 복사용지시장에서 피심인 4개사가 56.5%를 차지했으며 4개사의 한국시장 평균 톤당 수출가격은 2001년 3월 658달러에서 2004년 2월 750달러로 92달러나 인상됐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는 경성(Hard-core)카르텔에 해당되는 가격담합행위라고 판단, 가격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총 3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과징금 부과내역 〉

(단위: 건 천원)

구분	과징금
인다키아트	2,301
에이에프피티	657
어드밴스 페이퍼	539
유피엠	491
합계	3,988

이번 동남아 제지카르텔에 대한 조치는 흑연전극봉(2002년), 비타민(2003년) 국제카르텔 제재 이후 공정위가 처리한 세 번째 국제카르텔 사건이며, 공정위가 자진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호주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직접 조사를 진행해 자체역량으로 처리한 최초의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 비금융자회사 동시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8년 1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비금융회사 소유 금지·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하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 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또는 증손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경우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기업을 인수·구조조정·매각하는 PEF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PEF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한 PEF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08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동반부실화 위험 크게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29일, 같은 해 4월 1일 기준 자산기준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은 12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 5,739억 원으로 지난해의 1조 8,677억 원 보다 2,938억 원(1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2008년 4월 1일 지정된 79개 기업집단 중에서 2008년 7월 자산기준 상향조정(2조원 → 5조원)에 따라 38개 기업집단을 제외한 41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공정거래법상 금지되나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1,429억 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 4,310억 원이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 연속 지정된 41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채무보증은 지난 해(1조 7,713억 원) 보다 1,974억 원(11.1%)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1,429억 원)은 신규 채무보증이 936억 원 증가하고 기존 채무보증액 512억 원이 해소되어 2007년 1,006억 원보다 423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신규 계열편입과 채무보증 관련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추가(2007년 11월 시행령 개정)된 데 기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조 4,310억 원)은 신규 채무보증이 1,714억 원 증가하고 기존 채무보증 4,112억 원이 해소되어 2007년 1조 6,707억 원)보다 2,397억 원 감소됐다.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1998년 63.4조원, 2000년 7.3조원, 2004년 3.7조원, 2008년 1.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됨에 따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파급되는 대규모기업 집단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입찰상황판, 모든 공공기관과 연계로 입찰담합 감시체계 강화

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의 연계를 완료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지난 2006년 1월 1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상황판 가동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확대를 계속 노력해 온 결과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은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공정위에 입찰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은 시스템간 연계와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0개며,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51개,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16개,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 230개,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15개 등 총 312개다.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의 공공기관 연계 확대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담합 적발능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모든 공공부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Signal)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항공운송산업 분야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아직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관계부처, 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일반에 공개했다.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 시장의 시장구조, 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제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 및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보고서로,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하고, 2008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및 인터넷호텔산업 등 4개 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 및 가격규제가 많고 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담합,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한편,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권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집중도가 높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올해 경쟁정책보고서 발간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쟁정책보고서에 수록된 항공운송산업은 ▲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으로 ▲ 면허제도 개편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나 가격·사업 활동 규제 등 정부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 집중화된 과점적 시장구조, 항공시장의 국제카르텔 사례, 수직계열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담합·부당지원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 항공사업자는 제휴 항공 마일지를 과잉 판매할 유인이 있고, 마일리지 좌석제공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 등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공개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범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 활용할 예정이다.

▣ 2008년 1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1,050개에서 2008년 12월 1일 현재 1,069개로 전월 대비 19개(편입 24개, 제외 5개)가 증가했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12월 1일 현재 623개로 2008년 11월 3일의 604개에서 19개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27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 수는 2008년 12월 1일 현재 446개로 2008년 11월 3일의 446개에서 변동이 없었다.

증가내역은 ▲ 회사설립 4개 [에스케이: 크로스엠인사이트(주), 롯데: 롯데부여리조트(주), 한화: (주)예산테크노밸리, 동국제강: 디케이엘씨(주)] ▲ 지분취득 7개 [에스케이: 엠케이에스개런티(유), 엘지: (주)지투알, 한진: (주)삼울, 에스티엑스: 제일종합기술(주), 엘에스: 대성전기공업(주), 에이스냉동공조(주), 효성: (주)소림] ▲ 기타 13개 [엘지: (주)에이치에스애드, (주)탐스미디어, (주)알키미디어, (주)더블유브랜더커넥션, (주)투엔티투엔티, (주)엠허브, (주)프레스라인, (주)지아웃도어, (주)빅스컴애드, (주)엘베스트, (주)와이즈벨, 에스티엑스: (주)제일에이앤씨, 엘에스: (주)델텍]로 총 24개다.

기타사유로 편입된 엘지의 (주)에이치에스애드 등 10개사는 (주)지투알이 최대주주인 회사로 (주)지투알과 함께 편입, (주)와이즈벨은 (주)에이치에스애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주)에이치에스애드와 함께 편입됐다. (주)제일에이앤씨는 제일종합기술(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제일종합기술(주)와 함께 에스티엑스로 편입됐으며, (주)델텍은 대성전기공업(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대성전기공업(주)와 함께 엘에스로 편입됐다.

감소내역은 ▲ 지분매각 1개[이랜드: 흥플러스스테스코(주)(舊 (주)이랜드리테일)] ▲ 합병 2개[대림: 대림에이치엔엘(주), 현대백화점: (주)충북방송], ▲ 청산종결 2개[엘에스: (주)이앤알, 코오롱: 코오롱모터스(주)]로 총 5개다.

〈 2008년 11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08. 11. 3.	편입				제외							증감	2008. 12.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개)	604	3	4	12	19	-	-	-	-	-	-	-	19	623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1개)	1,050	4	7	13	24	2	1	2	-	-	-	5	19	1,069

■ 변동내용

가. 편입 : 24개사(회사 설립 4, 지분 취득 7, 기타 13)

나. 제외 : 5개사(합병 2, 지분 매각 1, 청산 종결 2)

▣ 2008년 1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09년 1월 2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40개 집단 1,050개로 2008년 12월 1일 현재 41개 집단 1,069개에서 19개(편입 7개, 제외 26개)가 감소했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1월 2일 현재 620개로 2008년 12월 1일의 623개에서 3개가 감소했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1월 2일 현재 26개 집단 430개로 2008년 12월 1일의 27개 집단 446개에서 16개가 감소했다.

증가내역은 회사설립 5개 [삼성: 삼성전자축구단(주), 에스케이: (주)이투스, 포스코: (주)포항에스에프씨, 신세계: (주)신세계와인컴퍼니, 현대: 현대펀드(주)]와 지분취득 2개 [지에스: (주)비엔씨, 엘에스: (주)휘닉스엠앤엠]로 총 7개다.

감소내역은 합병 1개[에스케이: 포항도시가스(주)], 청산종결 7개[에스케이: (주)노원좋은통신, (주)큐엘동작, (주)큐엘용산, (주)큐엘서초, (주)큐엘양천, (주)큐씨정보통신, (주)큐엘관악], 그리고 지정제외 18개[이랜드: (주)글로벌스포츠, (주)데코, (주)이랜드중국패션디자인, (주)이서비스, (주)프리먼트, (주)네이션닷컴, (주)뉴코아, (주)리드, (주)리드온, (주)와인캐슬, (주)이랜드, (주)이랜드건설, (주)이랜드레저비스, (주)이랜드시스템스, (주)이랜드월드, (주)김스클럽마트, (주)프란시아, (주)씨앤씨목산]로 총 26개다.

특히 기업집단 이랜드는 홈플러스테스코(주)[구 (주)이랜드리테일] 매각으로 인해 5조2천억원의 자산이 3조2천억원으로 감소되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2008년 12월 17일)됐다.

〈 2008년 12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08. 12. 1.	편입				제외							증감	2009. 1. 2.
		회사설립	지분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친족분리	지정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개)	623	4	1	-	5	1	-	7	-	-	-	8	-3	620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1개)	1,069	5	2	-	7	1	-	7	-	18	-	26	-19	1,050

■ 변동내용

가. 편입 : 7개사(회사 설립 5, 지분 취득 2)

나. 제외 : 26개사(합병 1, 청산 종결 7, 지정 제외 18)

■ 공정위 인사 동향

11. 18.

- ◎ 7급행정직 채용후보자 노현재
7급 시보임용전 수습발령

11. 26.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노용환
복직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11. 3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보(시보) 강치중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행정주사보(시보) 박무송
행정주사보에 임함.

12. 9.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유성욱
미국, Fordham Univ.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8.12.13.~2009.6.12.)

12. 12.

-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 행정주사보(시보) 조영미
행정주사보에 임함.

12. 13.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시보) 김은정
행정주사보에 임함.

12. 23.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육성권
2008년도 KDI 국내외연계과정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미국, Univ. of Wisconsin- Madison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9.1.3~2009.12.31)

12. 26.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9급(사무원) 김세리
기능8급(사무원, 근속승진)에 임함.

12. 29.

- ◎ 정재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기간 : 2008.12.29.~2011.12.28.)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재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유희상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길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 ◎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최정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감사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원) 이영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육야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9.1.1.~2009.12.31.)

12. 31.

- ◎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행정사무관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09년도 KDI 국내외연계과정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KDI 국제정책대학원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9.1.3.~2010.1.2.)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임형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 행정주사 이종영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8.12. 31.~별도 발령 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신규원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 근무를 명함.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8.12.31.~2009.1.30.)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주사 김학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8.12.31.~별도 발령 시까지)

- ◎ 카르텔정책국 제조카르텔과 행정주사보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이태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 ◎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이호섭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 (카르텔정책국 제조카르텔과 :
2008.12.31.~별도 발령 시까지)

- ◎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유승완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
과 : 2008.12.31.~별도 발령 시까지)